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8-67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 . .

발 의 자 : 이종숙, 송영섭, 윤유선, 정정희,
김선경, 이충숙, 김성한, 경기문,
신낙형, 황동현, 최동철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2014년 5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가 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’ 개정되며, 부칙에서 ‘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’로 규정함.
- 이에 따라,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,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출 재원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 (안 제10조)

-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생활보장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10. 31. ~ 11. 5.)결과 : “의견 없음”

2) 개정안, 신·구조문대비표, 관계법령 : 붙임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 법령】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 5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...

제4조(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